

에코델타시티 PRUGIO Lynn

| 주택형별 대상세대 |

주택형	84A (84A1, 84A2, 84A3, 84A4)	84B
대상세대	70	17

|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|

구분	배정 세대수												
공급대상	대상 및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민등록표상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 ② 생애최초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)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③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(1인 가구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하므로 당 사업지 청약불가 / 단 본인 외 다른 세대원(직계존속)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60㎡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) 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. ※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%이하인 자 ⑥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및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 충족 											
	당첨자 선정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당첨자 선정기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소득기준 (70%)</td> <td>우선공급(50%)</td> <td>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%이하인 자</td> </tr> <tr> <td>일반공급(20%)</td> <td>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%이하인 자</td> </tr> <tr> <td>남은 주택 (30%)</td> <td>추첨제(30%)</td> <td>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부동산가액 기준 : 3억 3,100만원 이하), 1인가구(당 사업지는 60㎡ 이하 공급세대가 없으므로 1인가구 청약이 불가합니다.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세대수의 5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%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%(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%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.) ③ 남은 주택(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%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)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<p>-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,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.</p>	구분	내용		소득기준 (70%)	우선공급(50%)	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%이하인 자	일반공급(20%)	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%이하인 자	남은 주택 (30%)	추첨제(30%)	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부동산가액 기준 : 3억 3,100만원 이하), 1인가구(당 사업지는 60㎡ 이하 공급세대가 없으므로 1인가구 청약이 불가합니다.)
	구분	내용											
소득기준 (70%)	우선공급(50%)	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30%이하인 자											
	일반공급(20%)	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%이하인 자											
남은 주택 (30%)	추첨제(30%)	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(부동산가액 기준 : 3억 3,100만원 이하), 1인가구(당 사업지는 60㎡ 이하 공급세대가 없으므로 1인가구 청약이 불가합니다.)					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의사항 -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 - 1인가구는 청약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당 사업지 60㎡ 이하 면적 공급이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. 단 본인 외 다른 세대원(직계존속)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60㎡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: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2항 및 「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」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입니다. -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-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-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											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 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모두가 이끄린 부산의 중심에서 - 우미'린답게! 푸르지오답게!

에코델타시티 PRUGIO Lynn

|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|

공급유형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/ 단위 : 원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, 50%)	130% 이하	~8,071,614원	~9,361,052원	~9,523,894원	~10,113,773원	~10,703,651원	~11,293,530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, 20%)	130% 초과 ~160% 이하	8,071,615원 ~9,934,294원	9,361,053원 ~11,521,294원	9,523,895원 ~11,721,715원	10,113,774원 ~12,447,720원	10,703,652원 ~13,173,725원	11,293,531원 ~13,899,730원
추첨제 (30%)	소득기준 초과/ 자산기준 충족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	1인가구	160%이하, 부동산가액(3.31억원) 충족	~9,934,294원	~11,521,294원	~11,721,715원	~12,447,720원	~13,173,725원	~13,899,730원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[(1인당 평균소득(453,753) * (N-8), 100% 기준)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.(단, 세대원의 실종·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
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년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 ※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. 단 본인 외 다른 세대원(직계존속)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60㎡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| 자산보유기준 |

구분	자산보유기준	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											
부동산(건물+토지)	3억3,100만원 이하	<p>■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정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
		건축물 종류	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								
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											
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											
주택 외	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									
<p>■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농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업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종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■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</p>													

부동산 소유현황 발급방법	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→ 등기열람/발급 → 부동산 → "부동산 소유현황" (발급시 주민등록번호 "공개" 체크)		
공시가격 확인	공동주택	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- 국토교통부 → 공동주택공시가격	
	단독주택	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- 국토교통부 →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	
	오피스텔, 상가	[건물분] 서울시 : 서울시 이택스 → ETAX이용안내 → 조회/발급 →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 서울시 외 : 이택스 → 지방세정보 → 시가표준액 조회 [토지분]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- 국토교통부 → 개별공시지가	
	토지	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- 국토교통부 > 개별공시지가	

※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이 3.31억원 초과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, 반드시 청약 전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 ※ 청약자격 미숙지,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